

담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

「담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5. 8. 19.

담양군의회 의장



1. 규칙명 : 담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
일부개정규칙안

2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0조(자문기관의 설치 등)의 규정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담양군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행동강령 조례운영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게 함으로써, 담양군의회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정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

-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수 : (현행) 5명 → (개정) 7명
-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행동강령 조례운영 자문위원회 기능을 대신한다.

나. 기타 띄어쓰기 및 자구 정비

4. 입법예고 기간 : 2025. 8. 19. ~ 8. 24.(5일간)

5. 의견제출

- 이 개정안에 대하여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담양군의회 의장(참조 : 의회사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에는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

다. 보내실 곳 : 담양군의회 의회사무과

-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
- 전화 : 061-380-3507~8(FAX 061-380-3590)

라. 의견제출 방법 : 전화, FAX, 직접방문, 우편

6. 규칙안 : 붙임 참조

□ 의견제출 서식

의견서		
1. 규칙안	담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	
2. 의견	관련조문	의견
3. 기타		
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 2025년 8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(전화 :) 성명 (서명 또는 인) 담양군의회 의장 귀하		

담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

일부개정규칙안

담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지방자치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5조 및 제66조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라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”로 한다.

제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윤리특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과 간사 각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, 위원, 간사 선임은 「담양군의회 위원회 조례」에 따른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개회일시”를 “개회 일시”로 한다.

제4조 전단 중 “때에는”을 “때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후단 중 “출석요구서”를 “별지 제1호서식의 출석요구서”로 한다.

제5조제3항 중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, “통지 한다”를 “통지한다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 본문 중 “위반사실”을 “위반 사실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공정을 기할”을 “공정하게 할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때에는”을 “때는”으로 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위원은 5명”을 “위원(이하 “자문위원”이라 한다)은 7명”으로, “위원장은 위원”을 “자문위원장은 자문위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

항 중 “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”을 “자문위원의 임기는 자문위원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(중전의 제4항) 제1호 중 “위원”을 “자문위원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위원이나 위원”을 “자문위원이나 자문위원”으로, “안건의”를 “안건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“위원”을 각각 “자문위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(중전의 제4항)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자문위원회 위원”을 “자문위원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7항(중전의 제6항) 중 “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”을 “자문위원회에 출석하는 자문위원”으로, “「담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”를 “「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”로 한다.

④ 자문위원회는 「담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」에 따른 행동강령조례운영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.

제10조 중 “들어야하며”를 “들어야 하며”로 한다.

제11조 중 “아니된다”를 “아니 된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<u>지방자치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5조 및 제66조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 등에</u>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라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----- ----- ----- -----.			
제2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, 간사 1인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	제2조(구성) ① 윤리특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과 간사 각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			
② 위원장, 위원, 간사선임은 <u>·</u> <u>담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· 제9조, 제10조, 제12조 규정에 따른다.</u>	② 위원장, 위원, 간사 선임은 「담양군의회 위원회 조례」에 따른다.			
제3조(위원회 개최의 통지)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 · 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때는 그 <u>개회일시와 장소</u> 등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	제3조(위원회 개최의 통지) ----- ----- ----- <u>개회 일시</u> ----- ----- -----.			
1. · 2. (생략)	1. · 2. (현행과 같음)			
제4조(심문)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필요한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	제4조(심문) ----- ----- 때는 -----			

심사대상의원과 그와 관련된 의원, 심사요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개최일 3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.

제5조(발언 및 해명) ①·② (생략)

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며,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해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 한다.

제7조(통고) 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,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제8조(제척과 회피) ① 위원을 윤리심사 또는 징계·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

----- 별지 제1호
서식의 출석요구서-----
-----.

제5조(발언 및 해명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따른

-- 통지한다.

제7조(통고) ① -----

----- 위반 사실-----
-----.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8조(제척과 회피) ① -----

가 있거나, 공정을 기할 수 없는
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
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
다.

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
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
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
수 있다.

제9조(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
성 및 운영) ① (생 략)

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5명의
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, 위원장
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
위원으로 위촉된 날로부터 3년
으로 한다.

<신 설>

④ 자문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
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
여할 수 없다.

1.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

----- 공정하게 할 -----

--.

② -----
----- 때는 -----

-----.

제9조(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
성 및 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위원(이하 “자
문위원”이라 한다)은 7명-----
----- 자문위
원장은 자문위원 -----.

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자문위원

-----.

④ 자문위원회는 「담양군의회
의원 행동강령 조례」에 따른
행동강령 조례운영 자문위원회
의 기능을 대신한다.

⑤ 자문위원-----

-----.

1. ----- 자문

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	<u>위원</u> ----- --
2. <u>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</u> 이 해당 <u>안건의</u> 당사자의 대 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 우	2. <u>자문위원이나 자문위원</u> ---- ----- <u>안건</u> ----- ----- --
3. <u>위원이</u> 해당 안건의 당사자 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 언·진술·자문·연구·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	3. <u>자문위원</u> ----- ----- ----- -----
4. 기타 <u>위원에게</u> 공정한 심의 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 정이 있는 경우	4. --- <u>자문위원</u> ----- ----- -----
⑤ (생략)	⑥ (현행 제5항과 같음)
⑥ 의장은 <u>위원회에</u> 출석하는 <u>위원에</u>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「 <u>담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</u> <u>조례</u> 」에 따라 참석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	⑦ ----- <u>자문위원회에</u> 출석하 는 <u>자문위원</u> ----- 「 <u>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</u> <u>운영 조례</u> 」----- -----.
제10조(의견수렴) 위원회는 윤리 심사 또는 징계·자격심사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<u>들어야하</u> <u>며</u> ,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.	제10조(의견수렴) ----- ----- ----- <u>들어야 하</u> <u>며</u> -----.
제11조(비밀의 엄수) 위원과 자문 위원 또는 위원과 자문위원으로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	제11조(비밀의 엄수) ----- ----- -----

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---- 아니 된다.